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업무 매뉴얼

201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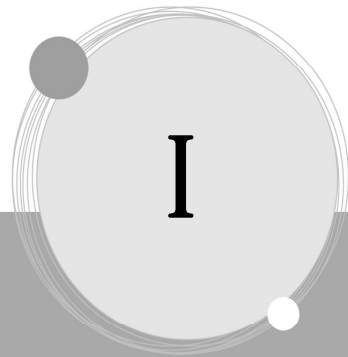
주의!

이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업무 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받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3
2. 기존 입찰제도 문제점 분석	3
3.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선방향	3
4. 주요 진행경과	4
5.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5
6.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6
II.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9
1. 입찰등급 및 입찰방식	11
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	15
3. 균형가격	21
4.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23
5. 세부심사방법	24
가. 수리이행능력	24
나. 경영상태	38
다. 경제성	40
라. 문화재수리계획	42
마. 결격사유	43
6. 공동수급체 심사	44
7. 심사위원회	48
III.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Q&A	51
붙임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71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85
3. 붙임 및 별지 서식	9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일반 건설공사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문화재수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실 문화재수리의 단초 제공
 -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투찰자가 낙찰
-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 및 계약제도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2. 기존 입찰제도 문제점 분석

- 기존 체계는 시설공사 조달체계와 유사하게 가격경쟁을 기반으로 한 적격심사제 적용
- 문화재수리 50억 원 미만 공사 시 입찰가격 70~90%, 수행능력 10~30%로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억 원 미만의 수리건은 입찰가격이 평가를 좌우하게 되어 기술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

3.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선방향

- 문화재수리 대상의 등급화 : 문화재수리의 규모·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등급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차등화 : 입찰등급에 따라 상이한 기준 적용
-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도입 : 기존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에서 기술력 중심의 입찰로 전환

4. 주요 진행경과

- '14.04월~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구성 및 운영
 - * 구성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협회, 관계전문가 등
 - * 운영 : '16.10월 현재 16회 개최
- '14.07월~'15.01월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 '15년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제정을 위한 법령 정비
 -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기획재정부, '15.12.31 개정)
 -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3제1항(행정자치부, '15.08.19 개정)
- '15.07~'16.01월 심사기준(안) 시물레이션 및 모의입찰
 - * 설명회 1회('15.08.21), 공청회 2회('15.12.15, '16.01.27)
 - * 시물레이션 참여업체 83개 / 모의입찰(7건) 투찰건수 164건(입찰건당 평균 23개 업체 투찰)
- '16.02~04월 행자부·기재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심사기준(안) 확정
- '16.05~08월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 '16.09월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 * (국가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16.09.19)
 -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 '16.09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문화재청 고시 제2016-84호, '16.09.27)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문화재청 고시 제2016-85호, '16.09.27)
- '16.10월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실시
- '16.10월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지역별 설명회 실시
 - * 일자 및 장소 : 대전(10.13), 부산(10.17), 대구(10.19), 서울(10.20), 광주(10.24)
 - * 설명회 대상 : 1부 공무원 대상, 2부 수리업체 대상

5.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 입찰등급 : 문화재수리의 규모·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문화재수리에 한해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계획서로 심사)
-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 입찰등급 1등급
 -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수리이행능력(60)+경영상태(10)+경제성(30)
 -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 상 : 수리이행능력(40)+문화재수리계획(20)
+경영상태(10)+경제성(30)
 - 입찰등급 2등급 : 수리이행능력(50)+경영상태(10)+경제성(40)
 - 입찰등급 3등급 : 기존 입찰방식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제성(투찰가격 점수) 심사 시 ‘균형가격’ 도입 : 경제성 심사 시 예정가격 기준이 아닌 투찰가격의 평균인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최저가낙찰제(기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개선)
도입목적	예산절감	》	수리품질제고 + 예산절감
평가요소	입찰가격	》	수리능력 + 입찰가격
낙찰자결정방법	낙찰하한율 기준 최저가 입찰자	》	최고득점자

[기존 입찰제도 Vs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6.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 시범사업 실시 사유

- 제도 도입 초기 혼란 최소화
- 실적(경력)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입찰건별 증빙서류를 수기 제출하여 업체 및 발주자의 업무량 폭증

* 실적(경력)관리제도 : '16.02.0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19.02월 시행
(현재 하위법령 마련 중)

*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 '19.02월 실적(경력)관리제도 시행 시 개통예정

○ 시범사업 실시 계획

- 실시 기간 : 2016~2017(2개년 예정)
- 시범사업 대상 : 2년간 60여건('16년 15건, '17년 45건 예정)
문화재청장 별도 고시('16년 15건 고시-2016.09.27.)
 - * 국 가 발주사업 : 문화재청 발주 문화재수리 중 선정('16년 3건)
 - * 지자체 발주사업 : 국고보조사업 문화재수리 중 선정('16년 12건)
- 2017년 시범사업 고시 계획 : 국고보조사업 확정 후 '17.02월 중 고시예정
- 향후 계획 :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검증 및 분석. 필요 시 개정안 마련 예정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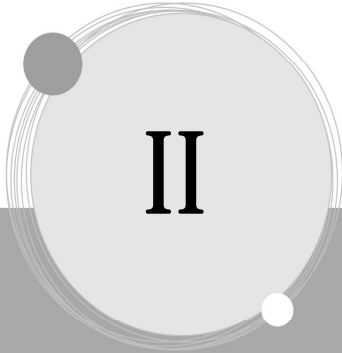
문화재청 고시 제2016-84호 2016.09.27.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종로구	사적 123	창경궁	창경궁 화장실 건립
2	서울	종로구	사적 121	사직단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3	서울	종로구	사적 122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등 종합정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문화재청 고시 제2016-85호 2016.09.27.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	사적 162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2	부산	금정구	사적 215	금정산성	서문 성곽 해체 및 보수
3	경기	포천시	사적 403	포천 반월성	성곽보수
4	전남	나주시	사적 483	나주목 관아와 향교	발굴지 정비
5	서울	종로구	사적 143	서울 문묘와 성균관	항문복원 계단설치, 담장 및 협문 등 보수
6	강원	원주시	사적 447	원주 영원산성	성곽복원
7	충남	부여군	사적 58	부여 나성	유구정비
8	충남	아산시	중민 233	아산 건재고택	고택 보수
9	전북	남원시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적묵당 복원
10	전북	전주시	보물 583	전주 풍패지관	서익현 드잡이 보수 및 정비
11	울산	중구	사적 320	울산 경상좌도병영 성	동문 복원
12	제주	서귀포시	중민 188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II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II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1. 입찰등급 및 입찰방식(예규 제4조 및 제5조, 별표 1)

가. 입찰등급

- 입찰등급 : 입찰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
- 해당 문화재수리의 중요도·난이도 및 복잡성·수리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중요도** : 수리 대상을 국가지정·지방지정·주변정비 등으로 구분
 - * 주변정비는 해당문화재수리보다 중요도 등급이 한단계 하향되어 있으니 주의
 - **난이도 및 복잡성**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혹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분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역서 상의 공종수로 구분
 - * 공종수 산정 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기준으로 가설공사는 제외! 조경공사는 포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
 - **수리규모** : 해당 수리의 추정가격으로 구분

관련조문

-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Ⅱ.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 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천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수장공사

나. 입찰등급의 조정

- 입찰등급 산정 후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 한단계 상·하향 가능**.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 3등급 적용 가능
 - *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이란 고증에 의하여 정비되는 관리소, 화장실이 아닌 편의시설 설치(보수)를 의미
- 2016~17년 시범실시 대상으로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의 경우,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으로 고시. 입찰등급 1~2등급 내 상·하향은 가능하나 3등급으로 조정은 불가

다. 입찰방식

- 문화재수리 공사 입찰방식
 - 입찰등급 1·2등급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
 - 입찰등급 3등급 : 기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수리대상에 대한 이해도·수리방법의 적정성·현장관리·현장공개 등에 대해 투찰자가 기술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사

관련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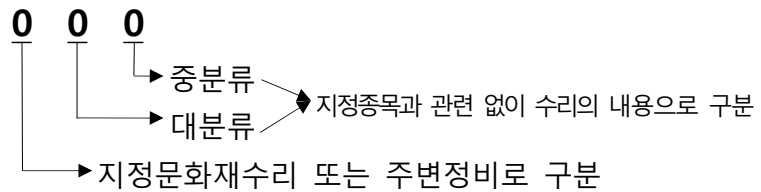
-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별표 2)

가. 문화재수리 분류 개요

- ‘문화재수리 분류’란 해당 문화재수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으로, 입찰등급,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등에서 활용
- ‘수리코드’란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해 부여된 세자리 숫자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등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판단 기준으로 활용

[수리코드]



나. 수리코드 부여 단계

- STEP 1. 해당 문화재수리가 지정문화재인지 주변정비인지 구분
 - *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가 복합된 경우 : 수리금액 기준 주된 수리로 구분
- STEP 2. 대분류와 중분류 결정
 - : 지정종목(국보, 보물, 사적 등)과 관계없이 수리 내용으로 구분
- STEP 3. 수리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 주구조가 복합되어 있다면 수리금액 기준 주된 수리로 구분

다.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의 구분

○ 지정문화재 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가지정문화재를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 *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재수리가 아님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 지정문화재를 둘러싼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단,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동일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한정)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의 구분(예시)>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로, 주변정비에 해당

예) 서울 화계사 명부전 보수정비

→ 문화재수리이며 주변정비에 해당

∵ 명부전은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로 이를 정비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주변정비)

예) 사찰권역(해당 문화재와 동일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해당되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보수정비

→ 문화재수리이며 주변정비에 해당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의 구분(예시)>

- 국보·보물 등 점단위 문화재의 주변정비라도, 해당 수리가 사적·명승·천기 등 면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지정문화재수리

예) 구례 화엄사 대웅전 주변 석축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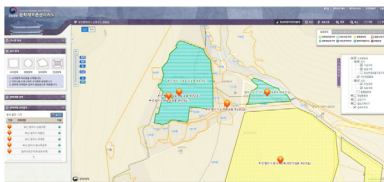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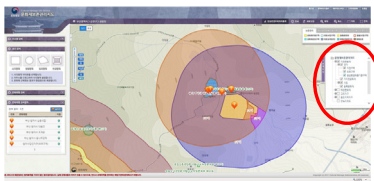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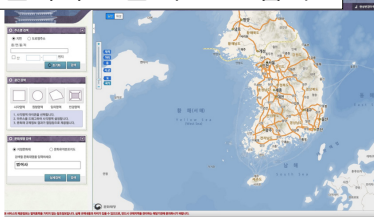
→ 지정문화재수리

∵ 수리명칭 상 주변정비로 판단되나,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지정구역 내 위치

TIP. 지정구역 내인지 보호구역 내인지 구분하는 방법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 문화재 공간정보(GIS)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문화재 또는 주소로 검색]



레이어관리

- ☒ 지정문화재
 - ☒ 국가지정
 - ☒ 시도지정
 - ☒ 등록문화재
 - ☒ 현상변경허용기준
 - ☐ 현상변경처리이력
 - ☒ 가지정문화재
 - ☐ 지번별 현상변경 처리이력
- ☐ 매장문화재
-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존구역
- ☐ 고도지구
- ☐ 특별보존지구
- ☐ 역사문화환경지구
- ☐ 주재도
 - ☐ 국유재산현황도
 - ☐ 용도지역지구
 - ☐ 시군구행정경계
 - ☐ 연속지적도

체크박스

- '현상변경허용기준' 체크박스 해제
- '연속지적도' 체크박스 체크

수리위치가 지정구역 내인지 보호
구역 내인지 판단

→ 지정구역 내 문화재수리 : 지정문화재수리

보호구역 내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지정구역·보호구역 내 수리가 아니더라도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 주변정비

라. 대분류 · 중분류

- 문화재 지정종목(국보·보물·사적 등)과 관련 없이 수리의 내용을 검토하여 구분
- 수리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면 수리금액 기준으로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구분

<수리코드(예시)>

수리내용	분류	수리코드	비고
사적 지정구역 내 목조화장실 개축	지정문화재수리- 건조물-목조건축물	111	-
보물인 대웅전의 기단보수와 주변정비인 목조 선방개축 (선방개축비가 더 큼)	주변정비-건조물- 목조건축물	211	-
기념물 지정구역 내 보물인 대웅전(목조) 후면의 석축보수	지정문화재수리- 건조물-목조건축물	111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담쟁이 (지장목) 제거 등은 부대시설 보수(정비)에 해당 되므로, 대웅전 후면 석축보수는 대웅전의 부대시설 보수에 해당
사적으로 지정된 지석묘군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석축설치	지정문화재수리- 성곽·유적·유적지	121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담쟁이 (지장목) 제거 등은 부대시설 보수(정비)에 해당 되므로, 유적지 부대시설 보수에 해당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

가. 지정문화재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나.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 · 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 · 유적	유적지	· 분묘 · 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 · 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가단, 방고, 참상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 · 펜스 · 배수로 · 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3. 균형가격(예규 제9조)

- 균형가격 : 제9조제2항에 따른 투찰가격의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절사)
- 균형가격 산정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종합점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 균형가격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향후 종합점수 산정 대상인 경우
 - 입찰서 20개 초과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 이상 20개 이내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미만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50이상, 최하위 입찰금액
 - 입찰서 2개 : 제외 없음
- * 입찰서 개수 산정 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제외

관련조문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경우는 100분의 85

< 균형가격 산정(예시)>

○ 유효한 입찰서가 12개 들어왔을 경우

- * 유효한 입찰 :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제외한 입찰
(계약법에 따른 무효입찰 및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84%미만인 입찰서는 제외)

구분	입찰금액 (천원)	비고
A	58,000	하위 1개 제외(하위 10%)
B	58,200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 해당
C	58,250	
D	58,320	
E	58,340	
F	59,000	
G	59,100	
H	59,110	
I	59,500	상위 4개 제외(상위 40%)
J	59,990	
K	60,000	
L	60,100	

- 유효한 입찰서 12개 중
 - 입찰금액 순 상위 40%인 4개
($12 \times 0.4 = 4.8 \rightarrow$ 소수점 절사)
 - 입찰금액 순 하위 10%인 1개
($12 \times 0.1 = 1.2 \rightarrow$ 소수점 절사)
 를 제외한 7개 입찰금액의 평균값이
균형가격
- 균형가격 = (B~H 입찰금액의 합)/(B~H 입찰서 개수)

$$= \frac{410,320,000}{7} = 58,617,142\text{원}$$
 (소수점 이하 절사)

입찰서 개수	입찰금액 제외범위
1개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함
2개	입찰금액 2개 산술평균
3개 이상 10개 미만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50%, 최하위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10개 이상 20개 이하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20개 초과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20%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4.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예규 제10조)

-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
: 수리이행능력(60)+경영상태(10)+경제성(30)
-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는 경우)
: 수리이행능력(40)+문화재수리계획(20)+경영상태(10)+경제성(30)
- 입찰등급 2등급
: 수리이행능력(50)+경영상태(10)+경제성(40)
- 감점요소
 - 결격사유($\Delta 20$) : 낙찰자 결정일 기준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신뢰도(매 건당 $\Delta 1.0$)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시 2년간,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시 2년간

관련조문

-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1]
 -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세부심사방법(예규 제12조, 별표 5)

가.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심사 : 최근 5년간 업체의 문화재수리 실적

$$\text{평가기준(비율)} = \frac{\text{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text{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times 100$$

단, 입찰공고 시 수리실적 평가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을 별도 명기하였다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그에 따름

* 수리실적 평가기준 조정 :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 70%까지 하향 가능(단, 최저금액 50억)

- 실적인정 범위(입찰하고자 하는 업종의 실적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한 모든 문화재수리(수리코드와 무관)
 -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 기준(정산 후 실 준공금액)

-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시 추가제출 서류]

1.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사본

*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문화재수리

TI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가 발주한 문화재수리의 실적증명서 발급은 보조금 교부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발급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별 실적 합산(시공비율 미반영)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 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B. 20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수리실적 심사(예시)>

○ (예시 1)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입찰건 / 추정가격 300,158천원

최근 5년간 수리실적	수리 코드	발주 유형	수리 실적금액(천원)		비율	평점
			개별 실적	합산금액		
A 수리	수리코드 무관	공공	165,165	616,400	205% (616,400/300,158)	9.65
B 수리		공공	125,287			
C 수리		민간	73,216			
D 수리		공공	172,549			
E 수리		공공	80,183			

○ (예시 2) 입찰등급 2등급 입찰건 / 추정가격 130,920천원

최근 5년간 수리실적	수리 코드	발주 유형	수리 실적금액(천원)		비율	평점
			개별 실적	합산금액		
A 수리	수리코드 무관	공공	95,756	398,641	304% (398,641/130,920)	20
B 수리		공공	45,872			
C 수리		민간	83,288			
D 수리		공공	112,942			
E 수리		공공	60,783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배치 기술자만 심사)

*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는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 적용

- 배치 기술자 : 입찰건에 낙찰될 경우 배치 예정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배치 기술자의 교체]

1. 낙찰 후 배치 기술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 기준 2년 이내 위반건수 1건당 종합점수 1.0점 감점-위반여부 문화재청에 확인
2.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 가능(기준일-배치 기술자 변경 요청일)
 - 배치 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배치 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 받아 「문화재수리법」 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감점대상 :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단, 분담이행 구성원 제외

- 평가기준(최근 5년간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 \Sigma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보정계수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수리구분	등급계수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기간 산정 시 공사중지 기간 포함]

* 문화재수리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현장배치기간 : 배치일부터 타 기술자 변경 배치일 전일까지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입찰 시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하향조정된 경우에는 해당 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와 이상 수리를 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단,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점수의 80%만 인정**

예) 2등급 문화재수리 입찰건에서 평가기준 4.2건, 재직기간 3개월인 배치기술자의 심사점수는 심사점수 7.0의 80%인 5.6점으로 인정

- 증빙서류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현장배치확인표(실적증명서 1개 당 1개 이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배치기술자 1인당 1부)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시 추가제출 서류]	
1.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문화재수리	

TIP. 현장배치확인표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면서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 기 작성되었던 현장배치확인표의 사본(원본 대조필)을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로 심사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

○ 입찰등급 2등급, 수리코드 112, 추정가격 128,000,000원인 입찰건

- 배치 기술자 '홍길동' 의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수리명	수리 코드	등급 계수	수리기간 (일)	보정 계수	현장배치 기간(일)	준공금액 (천원)	환산건수	
							개별	합계
A수리	112	1.2	650	2.0	530	325,000	$2.0 \times 1.2 \times \frac{530}{650}$	5.34
B수리	212	1.0	472	2.0	375	170,000	$2.0 \times 1.0 \times \frac{375}{472}$	
C수리	112	1.2	360	1.0	290	165,000	$1.0 \times 1.2 \times \frac{290}{360}$	
D수리	112	1.2	200	1.0	138	150,000	$1.0 \times 1.2 \times \frac{138}{200}$	
E수리	112	1.2	90	1.0	70	95,000	추정가격 미달	
F수리	222	1.0	150	1.0	150	274,000	수리코드 불일치	

→ 홍길동이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한 경우 : 심사점수 7.5점

→ 홍길동이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 심사점수 7.5점의 80%만 인정되므로 $7.5 \times 0.8 = 6.0$ 점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모두 심사/자격종목 무관)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

TIP. 근무기간 산정 기준 : 증빙서류(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상 입퇴사일로 근무기간 산정. 다만, 입사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일이 기준일

[6개월 미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기능자)로 「문화재수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된 경우 두 기술자(기능자)의 근무기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

* 동등 이상의 경력 : 동일 경력계수를 가진 자

- 평가기준 = Σ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해당 자격 취득 년수	경력계수	경력별(경력계수 기준) 인원수	등급계수
15년 이상	2.0	2명 이상	10.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1명	8.0
7년 미만	1.0		

단,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가능(계산 후 높은 점수를 받는 점수로 반영 가능)

예)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case 1. $2.0 \times 10.0 + 1.5 \times 0.0 + 1.0 \times 8.0 = 28$ 점

case 2. $2.0 \times 8.0 + 1.5 \times 8.0 + 1.0 \times 8.0 = 36$ 점 $\rightarrow$ 높은 점수인 36점으로 반영

- 증빙서류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1인당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 확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 확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 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

○ 입찰등급 2등급, 입찰공고일 2016.11.10. / 보유 기술자 능력 심사

연 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해당 업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경력 (년)	퇴사일	신고일
1	보수	000	홍 일 동	2000.03.08	'12.01.01	○	16	-	
2	보수	000	홍 이 동	2001.11.09	'15.01.01	○	15	-	
3	보수	000	홍 삼 동	2008.03.08	'16.05.01	×	8	'16.09.01	'16.09.09
4	단청	000	홍 사 동	2001.03.08	'16.09.09	×	15	-	
5	조경	000	홍 오 동	2014.03.08	'15.01.01	○	2	-	
6	단청	000	홍 육 동	2016.09.09	'11.01.01	×	-	-	-
						(자격취득일 기준)			
7	보수	000	홍 칠 동	2013.03.08	'16.09.09	×	-	-	-

→ 홍삼동(경력 8년) 퇴사 후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홍사동(경력 15년) 입사
 • 9월 1일 퇴사 후 30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홍사동으로 변경신고
 • 홍사동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홍삼동의 경력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인정 가능

단, 합산 시 홍삼동의 경력인 8년으로 인정

→ 15년 이상 2명(경력계수 2.0, 등급계수 10.0), 7년 이상 15년 미만 1명(경력계수 1.5, 등급계수 8.0), 7년 미만 1명(경력계수 1.0, 등급계수 8.0)

따라서, 평가기준 점수 = $2.0 \times 10.0 + 1.5 \times 8.0 + 1.0 \times 8.0 = 42$ 점 이므로,
 보유 기술자 점수는 5.0점

* 보유 기능자 점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수리업경력 심사

- 평가기준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단, 해당 입찰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종의 문화재수리업을 말함

예) 입찰공고일 기준 보수단청업 10년, 조경업 4년인 문화재수리업자가 조경업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은 4년 1개월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10년 이상	5.0
			B. 10년 미만 7년 이상	4.8
			C. 7년 미만 5년 이상	4.6
			D. 5년 미만 3년 이상	4.4
			E. 3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이 원칙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신인도 심사-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실적(건수)

* 소재지 기준

: 광역자치단체 기준(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에 편입하여 판단)

: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 모두 인정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

: 입찰 시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하향조정한 경우에는 준공금액이 해당 가격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 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시 추가제출 서류]

1.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문화재수리

TI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가 발주한 문화재수리의 실적증명서 발급은 보조금 교부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발급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 인정

○ 신인도 심사-영업정지 처분 심사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영업 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 증빙서류 : 영업정지 처분 공문 사본

TIP.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 이력을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공문으로 확인 필수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 심사-안전관리 심사

$$\text{-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text{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times 100$$

* 재해율 가중평균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 전 재해율×0.3+전전년도의 최근 2년 전 재해율×0.2]

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 전 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 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TIP. 건설업 재해율, 입찰자의 산업재해율확인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 심사-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공동수 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공동수급체 구성 점수 인정기준(공동계약방식 입찰참여에 한함)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증빙서류 : 별도 서류 없음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평가)

○ 신인도 심사-보수교육 이행실태 심사

-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최근 5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 수}}{\text{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자 수}} \times 100$$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보수 교육 이행	최근 5년간 보유 기술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보수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보수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증빙서류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교육수료증(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보수교육 : 「문화재수리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

* 교육수료증 :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나. 경영상태

$$\bigcirc \text{평가기준(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 자기자본(유동) 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 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기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자산총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

<경영상태 세부심사(예시)>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확인

- 해당 문화재수리의 입찰공고문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 제시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주제별자료 > 기업·산업으로 가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확인 가능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예시

- 자기자본비율 = $77,845,751,543 / 152,291,196,928 \times 100$
- 유동비율 = $117,614,788,093 / 48,709,125,588 \times 100$

제 3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현재)

(단위:원)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 동 자 산	117,614,788,093	I. 유 동 부 채	48,709,125,68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183,145,616	1. 파입차무및기타채무	31,100,143,948
2. 단기금융상품	7,676,772,648	2. 단기차입금	6,327,000,000
3.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26,182,440,806	3. 유동충당부채	3,683,728,063
4. 재고자산	68,780,719,168	4. 기타유동부채	7,018,179,221
5. 기타유동금융자산	618,921,469	5. 기타유동금융부채	1,710,074,366
6. 기타유동자산	7,373,788,697	II. 비 유 동 부 채	26,736,318,797
II. 비 유 동 자 산	34,676,407,836	1. 장기차입금	20,000,000,000
1. 장기금융상품	3,371,906,119	2. 비유동충당부채	2,112,376,768
2. 예대가능금융자산	22,473,800,702	3. 기타비유동부채	3,623,942,031
3. 투자부동산	0	부 채 총 계	74,445,444,386
4. 유형자산	3,678,493,996	자 본	
5. 무형자산	1,721,838,696	I. 자 본 금	60,447,432,600
6. 기타비유동채권	1,283,964,697	II. 기 타 불 입 자 본	6,743,136,062
7. 기타비유동자산	2,246,413,726	III. 기 타 자 본 구성 요소	309,433,020
자 산 총 계	152,291,196,928	V. 이 익 잉 여 금	21,345,749,961
		자 본 총 계	77,845,761,6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2,291,196,928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7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7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경제성

$$\bigcirc \text{평가기준(비율)} = \frac{\text{해당 투찰금액}}{\text{제9조제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균형가격]

1. 균형가격 : 입찰서 중 2의 입찰서를 제외하고 3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입찰서의 투찰가격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절사)
2. 균형가격 산정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종합점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3. 균형가격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향후 종합점수 산정 대상인 경우
 - 입찰서 20개 초과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 이상 20개 이내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 미만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50이상, 최하위 입찰금액
 - 입찰서 2개 : 제외 없음

< 균형가격 산정(예시)>

○ 유효한 입찰서가 12개 들어왔을 경우

- * 유효한 입찰 :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제외한 입찰
(계약법에 따른 무효입찰 및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84%미만인 입찰서는 제외)

구분	입찰금액 (천원)	비고
A	58,000	하위 1개 제외(하위 10%)
B	58,200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 해당
C	58,250	
D	58,320	
E	58,340	
F	59,000	
G	59,100	
H	59,110	
I	59,500	상위 4개 제외(상위 40%)
J	59,990	
K	60,000	
L	60,100	

- 유효한 입찰서 12개 중
 - 입찰금액 순 상위 40%인 4개
 - 입찰금액 순 하위 10%인 1개
 를 제외한 7개 입찰금액의 평균값이 균형가격
- 균형가격 = (B~H 입찰금액의 합)/(B~H 입찰서 개수)

$$= \frac{410,320,000}{7} = 58,617,142\text{원}$$
 (소수점 이하 절사)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30 (40)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23.00	30.00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24.75	32.50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26.50	35.00
	D. 균형가격의 100.5%이상 101.5% 미만	28.25	28.25	37.50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28.75	38.00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27.50	36.0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26.25	34.00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25.00	32.00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인 경우]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라. 문화재수리계획(입찰공고에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이라 명기된 경우에 한함)

- 평가기준 : 투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가 심사

*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문화재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 시 불이익]

1. 낙찰 후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계획서 이행여부 수시 점검.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 기준 2년 이내 불이행 건수 1건당 종합점수 1.0점 감점(위반여부 문화재청에 확인)
2. 점검대상 항목 :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함
3.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감점대상 :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단, 분담이행 구성원 제외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 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중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 ²⁾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마. 결격사유

-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일 기준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20

6. 공동수급체 심사(예규 제14조)

가.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심사 : 구성원 별 수리실적 합산(시공비율 미적용)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배치 기술자만 심사)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 5호 서식)으로 심사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모두 심사/자격종목 무관)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공동수급체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

공동수급체 A+B+C					
A사		B사		C사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10.0	45%	9.5	25%	9.0	30%
심사점수					
$10.0 \times 0.45 + 9.5 \times 0.25 + 9.0 \times 0.30 = 9.575\text{점}$					

* 심사점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제11조제2항)

○ 수리업경력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의 수리업경력 심사(예시) >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것이 아닌 경우

공동수급체 A+B+C					
A사		B사		C사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4.6	35%	4.4	15%	5.0	50%
심사점수					
$4.6 \times 0.35 + 4.4 \times 0.15 + 5.0 \times 0.50 = 4.77\text{점}$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A+B+C					
A사		B사		C사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4.6	40%	4.4	30%	5.0	30%
심사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심사점수가 높은 C사의 점수로 인정 5.0점					

○ 신인도 심사-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점수만 반영

○ 신인도 심사-영업정지 처분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 심사-안전관리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 심사-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세부심사방법 참조

○ 신인도 심사-보수교육 이행실태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나. 경영상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다. 문화재수리계획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심사

관련조문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7. 심사위원회(예규 제21조~제26조)

○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자격 :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03.25. 개정

제11조(전문위원)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심사위원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관련조문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관련조문

제23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5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심사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9]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III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Q&A

III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Q&A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관련>

Q. 문화재수리를 낙찰 받은 후 배치 기술자(기능자)를 입찰 전 혹은 수리 중에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변경 배치할 수 없습니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제출한 기술자(기능자)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으로 향후 2년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의 종합점수 산정 시 매 위반건당 1.0점씩 감점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Q. 업체 소속이 아닌 기술자를 배치기술자로 제출해도 되나요?

☞ 배치 기술자(기능자) 또는 보유 기술자(기능자)는 모두 입찰자 소속 직원에 한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업체 소속이 아닌 기술자를 배치기술자로 제출할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점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올림)하여 계산하나요?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 시 평가기준의 경우는 소수점 끝까지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심사점수(평가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 등으로 심사점수에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예규 제11조)되어 있습니다.

Q.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 이상의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라 되어 있습니다. 동등이상의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그 기술자는 수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성곽보수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성곽보수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소수업체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의 목적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문화재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자나 경력이 적은 기술자의 경우에는 숙련된 기술자와 함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 실력을 쌓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수리실적의 경우는 업체가 수행한 모든 문화재수리 실적을 내용에 상관없이 인정하고 있고, 입찰등급 3등급 수리의 경우 현행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소수업체의 독점 관련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추정가격 5억 이상 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만약 A라는 기술자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수리 실적이 10건 이상 있다하더라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에서는 1건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이 되는데, 이는 [별표 2]에 따른 동일 문화재수리이면서 준공금액이 추정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인데,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 두가지 조건(동일 문화재수리이면서 준공금액이 추정가격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동등이상 문화재수리로 인정됩니다. 이는 신인도 심사 중 수리지역 전문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 시 A라는 문화재수리에서 착공할 때에는 기술자 B를 배치하였으나, 공사중지가 있는 다음에는 기술자 C로 변경하여 배치 한 경우 공사중지 기간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경우 ‘현장배치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지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자 B의 현장배치기간은 기술자 C의 현장배치일 전날까지이며, 기술자 C의 현장배치기간은 현장배치확인표의 현장배치일부터입니다.

Q.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배치 기능자는 경력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최고배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제도하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문화재수리 기능자의 경우는 그 실적을 증빙할 공적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력관리제도가 정착되면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도 점수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Q. 동시에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동일한 기술자를 배치 기술자로 제출해도 되나요?

☞ 이 단계에서는 낙찰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되는 입찰을 모두 낙찰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 개수를 초과하게 된다면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관련>

Q.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점수 계산에서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 상위 경력 인원이 하위 경력 인원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 15년 이상 경력의 인원이 2명이고 7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인원은 없다고 할 때, 이를 15년 이상 1명과 7년 이상 15년 미만 1명으로 점수 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산정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쪽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에서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15년 미만 0명, 7년 미만 1명의 평가기준 점수는

$$2.0 \times 10 + 1.0 \times 8.0 = 28\text{점}$$

15년 이상 1명, 7년 이상 15년 미만 1명, 7년 미만 1명의 평가기준 점수는

$$2.0 \times 8 + 1.5 \times 8 + 1.0 \times 8.0 = 36\text{점}$$

이므로, 평가기준 점수를 36점으로 하는 것이 입찰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는 해당 등급에 맞는 인력을 총원하기 위해 도리어 기존 직원을 해고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점수를 위해 총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된 것입니다.

따라서 점수계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상위 경력자를 이동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하위 경력의 인력이 상위 경력의 인력으로 이동될 수는 없습니다.

Q.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를 작성할 때, 기술자나 기능자가 회사에 자격증 취득 이전에 입사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기간도 6개월 이상 근무기간 산정 시 포함되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으로 심사요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 후 근무기간만 포함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를 보면 보수기술자나 단청기술자 등 분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기술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력이라는 전제하에 A회사에는 보수기술자 3명과 단청기술자 1명이 B회사에는 보수기술자 1명과 단청기술자 3명이 있어도 같은 역량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보수와 단청은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점수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분야별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문화재수리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기술자 2명도 만족시키기 힘든데 그것을 분야별로 구분한다면 점수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은 분야별 구분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Q. 보유 기술자 심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근무한 기술자의 근무사실을 4대 보험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보유기술자 심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문화재수리업 등록권자인 시·도가 발급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와 고용보험공단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 및 기능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과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퇴사일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 보유 기술자 평가 시 보수기술자(4년 경력)가 퇴사하고 단청기술자(15년 경력)가 새롭게 입사하는 경우,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의 평가대상이 되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와 달리 자격증 종류나 해당 입찰건의 공종과 상관없이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자를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산정 시,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기능자)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된 경우 두 기술자(기능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상기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전제하에 4년 경력 보수기술자의 퇴사 전까지 근무기간과 15년 경력 단청기술자의 입사 후 근무기간의 합이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이면 4년 경력의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15년 경력의 단청기술자가 퇴사하고 4년 경력의 보수기술자가 입사한다면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합산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입사한 기술자가 최근 1년간 문화재수리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다가 (1년 전에는 다년간 수리업체 근무경력이 있음) 해당 입찰에 참여예정인 문화재수리업체에 신규입사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2개월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1년 이전에 근무했던)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해당 수리업체에 대한 평가로서, 업체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타 회사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타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도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합산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관련>

Q. 수리이행능력 심사 중 수리실적 심사는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받아놓은 실적증명서는 인정이 안 되나요?

☞ 기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 양식과 동 예규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새로 작성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기존 적격심사에서 사용되었던 실적증명서랑 다른가요?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는 수리코드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배치 기술자 심사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간을 기입란이 있는 등 기존 적격심사의 실적증명서와는 양식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적격심사로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는 기존 실적증명서 양식대로 발급받으시고, 동 예규에 따라 발주되는 문화재수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입찰 시 제출하는 실적증명서를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실제로 발주처에서 여러 장을 받아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7건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7장의 실적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동 예규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규 제8조제2항에서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해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 민간자본적보조사업도 발주할 때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해야 하나요?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는 「지방계약법령」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동 예규에 따라 발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별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더라도 교부조건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면 동 예규에 따라 발주될 수도 있습니다.

Q.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행된 문화재수리의 실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국비나 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발주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관련 서류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Q. 사찰 등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 민간자본으로 수행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실적증명서 발급은?

☞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 민간자본으로 수행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발급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됩니다. 다만, 민간자본으로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의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때,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실적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발급받는 것이기에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실적증명서에 배치기술자란을 기입할 때 현장배치확인표에 따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장배치확인표는 현재 기술자 배치가 중복이 될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비치할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수리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배치와 관계없이 현장배치확인표는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현장배치확인표는 과거 문화재수리를 수행할 때 발주자의 확인을 받았던 그 서류의 사본이어야 합니다.

Q. 실적증명서 발급은 문화재수리 담당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업무인가요?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업무는 해당 기관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Q. 전통사찰에서 한 수리는 문화재수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전통사찰 내에 지정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문화재수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 실적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과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 이미 2016.09.21. 시행되었으므로 실적증명서 발급업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2016년 시범사업 목록 15건이 2016.09.27. 고시되었고, 동 예규를 적용한 최초의 입찰공고는 11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발주처에서 실적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는 변동되는 자료이므로 입찰공고일 당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겠지만 실적증명서의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Q. 발주처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예전 공사 기록이 파기되어서 없다고 한다면 실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 수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실적만 인정되고, 그 기간의 자료는 발주처가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전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Q.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동안 시행했던 문화재수리의 발주처를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 현재는 문화재수리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리실적은 최근 5년 내 실적으로 입찰건의 추정가격 기준 300%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만점이 되므로 입찰자가 만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필요하신 만큼 발급받으면 됩니다.

Q. 실적증명서에서 준공금액이란?

☞ 모든 정산을 완료한 최종 준공금액을 뜻합니다.

Q.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차수로 계약한 다음 연차별로 분리해서 계약합니다. 이때 1차년도 준공된 실적의 실적증명서가 유효한가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문화재수리 실적은 최종 준공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이 아닌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리코드 관련>

Q. 수리코드는 발주처가 기입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공자가 확인하고 요구하여 기입하는 것인가요?

☞ 발주처와 수리업체가 의견을 나누어 정확한 수리코드를 찾아 기입하시면 됩니다. 수리코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만약 향후 수리코드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 또한 양쪽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 결정할 때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건조물 구분을 보면 주구조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1층의 주구조는 콘크리트이고 2층의 주구조는 목조라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건조물의 구분은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을 하되, 주구조가 질문과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비중이 큰 쪽을 주구조로 판단합니다.

Q. 수리코드 111번의 실적이 수리코드 211번의 실적으로 인정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를 보면 동일 문화재수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수리코드 세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는 지정문화재수리인지 주변정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 문화재수리 구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리코드 뒤의 두자리를 대분류와 중분류라고 하며,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라면 동일 문화재수리로 봅니다.

<입찰시스템 관련>

Q. 이 예규가 적용되는 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축되어 있나요?

- ☞ 현재 문화재수리 입찰만을 위한 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 후 나라장터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이란 기간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 ☞ 입찰 시에 이미 원본서류들을 다 갖추어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로 업로드 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심사결과 발표 후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때 전산으로 제출했던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기에 3일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Q. 입찰서류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하면 변경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 ☞ 예규 제8조제4항에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입찰자의 자의적인 수정·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8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개찰을 하게 되면 종합평가하여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 예규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나요?

☞ 이번 예규의 경우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기타>

Q. 불상이나 전적 등 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을 수리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가 아닌가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문화재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물을 보수하는 행위는 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화계사 명부전 보수정비’에서 명부전은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을 보호하고 있는 건물로 이를 보수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주변정비)에 해당합니다.

Q. 문화재감리와 실측설계 입찰 시에도 동 예규가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제도가 공사로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에 대해 문화재수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것처럼 동 예규 또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등급 1~2등급 문화재수리공사에만 적용됩니다.(2016~17년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에만 적용)

Q. 동산문화재의 수리도 이번 예규의 적용대상인가요?

☞ 이번 예규는 문화재수리 공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수리가 공사로 발주된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Q.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이 기존 기술자 4명, 기능자 6명에서 기술자 2명, 기능자 3명으로 완화되었는데,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인력을 늘리게 된다면 제도를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기술자 2명, 기능자 3명의 기술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입니다.

이번 예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Q. 낙찰될 경우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현장배치확인표 등은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1부 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서류도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와 같이 발주자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아니고, 해당 문화재수리 진행 중 만들어진 서류인 현장배치확인표,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등은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 2016. 09. 19.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9. “예정가격”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을 따른다.

제7조(입찰광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문화재수리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1]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의한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의한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의한다.

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9]에 의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문화재수리가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금액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

자를 결정한다.

1.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가 높은 자(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추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문화재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용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위원 위촉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해촉은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제1항의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 [별표 11]의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재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 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심사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9]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2016.09.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문화재수리 공사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6. 9. 21.]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문화재수리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1]
 -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② 심사항목 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의한다.

-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의한다.

-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의한다.

-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의한다.

- 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9]에 의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문화재수리가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금액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와 공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문화재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5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심사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9]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7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4. (시범사업의 특례) 부칙 “2” 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적용일 이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의 사전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가 지정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시도지정문화재 (가 지정문화재 포함)	유형문화재			중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문화재자료			저			
Ⅱ.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규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정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정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정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중요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규모	대	1	1	2	상	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규모	대	1	1	2	상	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

가. 지정문화재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나.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 석조물: 석담, 전담, 석불, 석굴, 승탑, 비감, 석등, 석교, 계단, 석가단, 빙고, 참상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1) 동일 문화재수리

가)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

수리코드 : 000	
대분류	중분류

나)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

2)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3)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4)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별표 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3-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문화재수리계획 (20점)	문화재수리계획능력	문화재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B. 20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1)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

다)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 민간발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공사

2)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 100

3)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
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4)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6)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와 해당 동등수행 이상 수리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 주 :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2)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3)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 \sum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문화재수리기간}}$$

* 보정계수 : 해당문화재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 문화재수리기간 및 해당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4)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학·경력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부터 마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 다)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
- 라)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 바) 고용보험피고험자격내역서(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각각 제출)
- 5)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 6) 해당 문화재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 7)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 8)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 9)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10)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 11)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다)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라)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 12)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함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 13)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 확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 확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 자 및 기능자로 입 찰공고일 당시 6개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 주 :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2)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8.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예)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8점(= 2.0 $\times$ 10 + 1.0 $\times$ 8.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36점(= 2.0 $\times$ 8 + 1.5 $\times$ 8 + 1.0 $\times$ 8)으로 산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1인당 1부)

4)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동일한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말한다)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 기간	5.0	A. 10년 이상	5.0
			B. 10년 미만 7년 이상	4.8
			C. 7년 미만 5년 이상	4.6
			D. 5년 미만 3년 이상	4.4
			E. 3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1) 수리업경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문화재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3)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 주 :

1)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문화재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문화재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재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

다)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 민간발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공사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영업 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공문으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가. 영업정지 공문 사본 1부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주 :

-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text{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times 100$$

-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text{ 재해율 가중평균} = [\text{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재해율} \times 0.5 + \text{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 \times 0.3 + \text{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 \times 0.2]$$

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산업재해통계의 최근 3년 간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주 :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어야 한다.
-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보수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보수교육 이행	최근 5년간 보유 기술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보수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보수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주 :

- 1) 보수교육 이수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최근 5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 수}}{\text{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 \times 100$$
- 2) 보수교육 이행실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나) 교육수료증 1부(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보수교육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말한다.
 * 교육수료증이란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말한다.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1)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2)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을 기준으로 한다

3) 해당 문화재수리의 입찰공고문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 에 의한 평가 (균형가 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23.00	30.00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24.75	32.50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26.50	35.00
			D. 균형가격의 100.5%이상 101.5% 미만	28.25	28.25	37.50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28.75	38.00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27.50	36.0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26.25	34.00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25.00	32.00
	균형가격 에 의한 평가(균 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주 :

1)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square \text{ 입찰가격 평가기준} = \frac{\text{해당 투찰금액}}{\text{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20

※ 주 :

-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별표 9]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 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 우(4.5), 미(4.0), 양(3.5), 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 우(4.5), 미(4.0), 양(3.5), 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 우(3.6), 미(3.2), 양(2.8), 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 우(3.6), 미(3.2), 양(2.8), 가(2.4)
현장공개 계획 (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 우(1.8), 미(1.6), 양(1.4), 가(1.2)
합계		20점

※ 주 :

- 1)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 하며,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 3) 감점대상은 문화재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 번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총 관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 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 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다.「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 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 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 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각 1부	신청자	
		바.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기술자 각각 제출)	고용보험공단	

심사항목	연 번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기술자 및 기능자 각가 제출)	고용보험공단	
수리업경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9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10	영업정지 공문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안전관리	11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수교육 이행실태	12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교육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영상태	13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문화재수리 계획	14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5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공고번호	
문화재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문화재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 대상 문화재수리

공고번호	0000000000-00	입찰일시	0000-00-00
문화재수리명	0000 보수정비		

2. 종합점수(입찰가격, 문화재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보수교육 이행실태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계약실회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Ⅰ (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대 표 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응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문화재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00	00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4. 기타(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수리건수	25건	10건		
	수리금액	000,000원	000,000원	원	원
평가기준		$\frac{\text{최근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text{해당문화재수리추정가격}} \times 100$			%
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연 번	문화재수리명	수리 코드	준공금액 (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문화 재 수 리 와 동등이상인 문 화 재 수 리 를 수 행 한 실적	보수 제000호	1	○○○ 보수	1141	000,000	00	0	
		2	○○○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홍 길 통	3						
		4						
	2015.00.00	5						
		6						
	자격종목 및 번호	1						
		2						
	배치기술자 이 름	3						
		4						
	입사일	5						
		6						
평가기준		Σ 보정계수×등급계수× $\frac{\text{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 문화재수리기간}}$						건
점수		점						
증빙서류(실 적건별 제출)	1. 문화재 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각 1부.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1인당 1부)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sum$ 경력계수 $\times$ 등급계수					점	
점수		$\sum$ 구성원별 점수 $\times$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문화재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1인당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210mm $\times$ 297mm [백상지 80g/m²]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 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점수 = Σ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점수 = Σ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점수		Σ 구성원별 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1인당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점수	1. 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 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Σ 평가점수 $\times$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 번	문화재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시공자	수리기간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 한 지역에서 동등 이상 문화재 수리 실적	1					
	2					
	3					
	4					
	5					
점수산출 근거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건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점수		점	점	점
점수산출 근거		Σ 점수 $\times$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공문 사본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 1년			
	1년~2년			
	3년			
점수산출 근거		재해율 가중평균(경과계수 반영)		
증빙서류		1. 산업재해를 확인서 각 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5) 보수교육 이행실태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보수교육 이수일	
최근 5년간 보수 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I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 02. 16~20	
		2					
		3					
		4					
		5					
		6					
		보수교육 이수율					%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보수교육 이수율					%
점수산출 근거		Σ 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1. 교육수료증 각 1부					

6.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평균	입찰자	평가기준 비율	평균	입찰자	평가기준 비율
자산 및 유동비율	구성원 Ⅰ	%		%	%		%
	구성원 Ⅱ			%			%
	구성원 Ⅲ			%			%
점수		Σ 점수 × 시공비율			Σ 점수 × 시공비율		
		자기자본비율 평가점수 + 유동비율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앞 쪽)

I. 일반적인 사항				수리 코드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문화재수리 기준작성)	계약일자		수리금액 (준공금액)	원	
	착공일자				
	준공일자		수리기간 (일)	일	
수리 구분	지정번호	보물 제1호	문화재명	서울 흥인지문	
	지정문화재 수리[], 주변정비[]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II.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I (대표)	구 성 원 II	구 성 원 III
회 사 명			
대 표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공동도급 규모 및 내용			
수리금액	원	원	원

III. 배치 기술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I	기 술 자 II	기 술 자 III
배치 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 치 기 간			
배 치 일 수	일	일	일

210mm×297mm[백상지 80g/㎡]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구 분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회 사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원	원	원

V. 붙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준공실적 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속 업체명): 대 표 자명(또는 신청 기술자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수리코드는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2) 수리구분 가.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나.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7)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8) 실적에 관련된 문화재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비 고
문화재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

□ 문화재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가 위 원 :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점수
			수	우	미	양	가	
1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법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5.0	4.5	4.0	3.5	3.0
2	수리방법의 적정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3	전통기법의 발굴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4.0	3.6	3.2	2.8	2.4
4	현장관리 의 적정성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5	현장공개 계획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0
합 계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

☐ 심사위원 : 실명은 비공개

☐ 심사점수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 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 귀하

※ 불 임 : 문화재수리 계획서 1식

문화재 수리명					
입찰자		대표자		소재지	

1. 문화재수리 개요

1.1 문화재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문화재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문화재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